

●기상청공고 제2023-53호

관보 제20470호(2023.03.30.)에 게재된 기상청공고 제2023-43호(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3년 04월 12일

기상청장

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정정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<p>제6조(기상측기 부분 교체·추가 시 검정) 기상측기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의 경우 해당 기상측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기상측기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부분 교체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센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6조(기상측기 교체·추가 시 검정) 기상측기를 교체(기상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교체를 포함한다)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·규격 및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6조 내용 변경</p>
<p>제8조(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)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.</p>	<p>제8조(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)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.</p>	<p>제8조 내용 변경</p>